

본인서명사실발급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 | | | |
|------------------------------|------------------------------------|--|-----------------------|
| 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성명 (한자) | () | 서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사용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등기설정, 기등기말소 등) | |
| |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 | 거래상대방 등 |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
| 수입인 | 성명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 | |
| 비고 | | | |
| 발급번호 | 수수료 | 600원 | |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년월일 |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 | 직인 | |

▶ 서명 후 “사용용도”란과 “수입인”란 작성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사전 절차 |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 신청 주체 | • 본인 또는 대리인 | • 본인 | • 본인 |
| 신청 방법 | • 증명청 방문 | • 발급기관 방문 | • 전용사이트 접속 |
| 본인 확인 |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 관란시 무인확인 |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 관란시 무인확인 |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 확인 방법 | • 인감날인 | • 본인 자필서명 | • 공인전자서명 |
| 발급 형태 | • 문서 | • 문서 | • 전자문서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



* <http://www.minwon.go.kr>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대효과는?

- **국민편익 제고**
인감과 같이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음
-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 향상**
인감 등록대장의 작성·관리와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행정업무 감축



2012년 12월 1일 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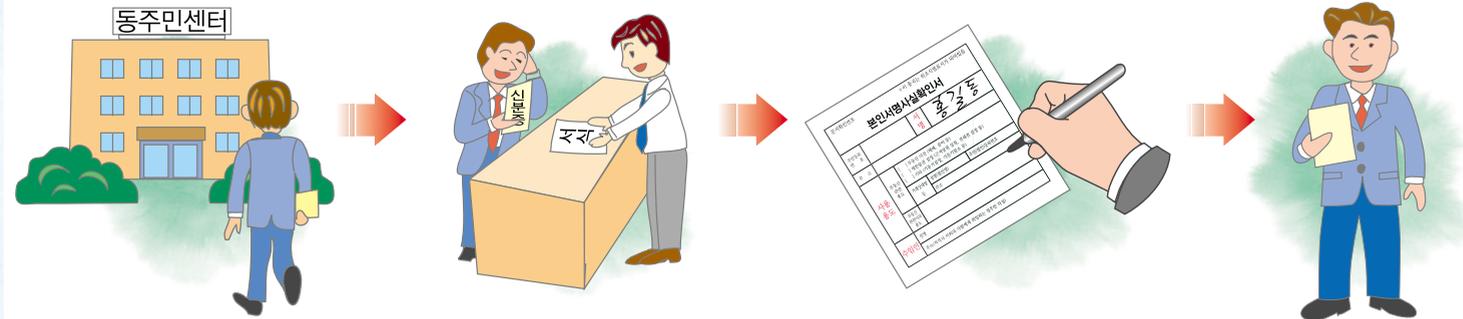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신분증·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발급 (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수요기관 제출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 8. 2 시행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없다.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사무소 및 출장소
- 수수료 : 600원(통)
- 신분증 제시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